

예술 부문에 있어서 저작권의 이해

채 명 기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정책연구팀장

흔히 미(美)를 창조하고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 또는 그 산물을 ‘예술’이라고 말한다. 예컨대, 문학·음악·회화·조각·연극·영화 등의 작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예술작품을 법적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부른다. 저작권법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작품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며, 그 보호 등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

예술작품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확인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작품에 해당한다.

- 어문저작물(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등)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연극 및 무용·무연극 등)
- 미술저작물(회화·서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등)
- 건축저작물(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 사진저작물(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그러나 저작권법은 보호받는 저작물을 예시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작품이더라도 창작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물의 법적 보호 요건

아무리 근사한 작품이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저작물성 요건’이라 한다.

첫째, 문학·학술·예술에 관한 작품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요건은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오늘날 문학·학술·예술에 관한 작품이 아닌 컴퓨터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창작적인 작품이어야 한다. 즉,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아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새롭고 유일하거나 기존의 유사 작품보다 한 단계 진보된 것일 필요는 없다. 또한 고도의 전문적인 창작성을 갖출 필요도 없다.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은 정도이면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셋째, 외부적으로 표현된 작품이어야 한다. 즉 작품이 글, 소리, 그림, 형상 등의 방법에 의해서 외부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상이나 감정을 가진 작품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외부로 표현되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할 따름이다.

저작권의 의미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작권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

저작권과 소유권은 엄연히 다르다. 저작권은 저작물이라는 무체물을 이용할 권리를 말하고, 소유권은 물건과 같은 유체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이다. 예컨대, 화랑에서 그림 1점을 구입하거나 서점에서 책 1권을 구입하였다면 그

것은 그림 혹은 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그 그림이나 책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림이나 책을 복사하여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혹은 증여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한 행위는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저작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저작권자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의 발생

예술작품을 포함한 모든 저작물은 창작을 완료한 순간 저작권이 발생한다. 즉,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나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를 '무방식주의' 라고 하는데, 이 점이 반드시 사전에 출원 등록을 해야만이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 등과 다르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작가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작가의 명예나 성명 등 인격을 보호해 주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세부적 권리로 구성된다. 복제권·배포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2차적저작물작성권·편집저작물작성권이 바로 그것이다.

복제권은 작품을 복사하거나 녹음·녹화 등을 할 권리를, 배포권은 작품을 대여하거나 양도 등을 할 권리를, 공연권은 작품을 상영하거나 연주 등을 할 권리를, 방송권은 작품을 TV 혹은 라디오 수송기를 통해 송신할 권리를, 전송권은 작품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할 권리를, 전시권은 작품을 일반공중이 접근하여 볼 수 있도록 나열할 권리(전시권은 미술·사진·건축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작품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기타 축약 등을 할 권리를, 그리고 편집저작물작성권은 작품을 선택·배열하거나 구성할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격권도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창작하여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최초 공표시 저작자가 실명(實名) 또는 이명(異名)을 표시하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을 권리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이다.

저작권의 성질

저작권은 배타적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어느 작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자를 찾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사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곤란하다. 이것은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작가의 일신에 전속(專屬)하기

저작물은 배타적 성질을 가진다. 어느 작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자를 찾는 것이 어렵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먼저 이용하고 나중에 저작권자가 나타나면 사례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곤란하다. 이것은 이미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양도나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은 작가의 일신에 전속(專屬)하기 때문에 양도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양도나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의 공정 이용

저작권법은 예술작품의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예술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것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저작권법에 여러 가지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중요한 몇 가지만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하여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예술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하거나 학교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예술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공연·방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예술작품을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서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둘째, 시사 보도 과정에서 예술작품이 보이거나 들리는 경우이다. 예컨대, 기자가 길거리에서 사건 보도를 하는 중에 보도 내용과는 상관없이 주변 상가에서 틀어놓은 음악이 들리거나 주변 건물에 설치된 예술작품이 비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것은 기자가 예술작품을 의도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건 보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이거나 들릴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셋째, 인용(引用)을 위하여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예술작품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출처를 밝히고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인용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인용되는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하는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附從的) 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지나치게 많이 이용되어 인용되는 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해서는 안 되며, 또한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넷째, 개인 목적을 위하여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예술작품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거나 또는 구성원 간 긴밀한 유

대관계를 가지는 소규모 동아리 및 모임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장에 전시할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도서관에서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도서관 사서가 열람자에게 소장 도서의 일부를 복제하여 제공하거나 도서관 내 열람자에게 전송할 목적으로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축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섯째, 수험생의 평가를 위한 시험 문제에 예술작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학교의 기말·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하여 이용하거나 수능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의 문제지에 예술작품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출제하는 시험 문제에 예술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곱째, 소장한 미술작품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미술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작품을 전시하거나 전시를 위하여 제작하는 소책자에 해당 작품을 복제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과는 달리 그러한 소책자는 호화 컬러판으로 제작되거나 판매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소장 작품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전시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터넷 전시는 전송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예술작품의 보호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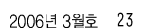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예술작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이것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예술작품의 출판

예술작품은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일반 공중에 전달된다. 그 매체 중의 하나가 출판이다. 예술작품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작가와 출판사 간에 계약이 먼저 체결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출판계약이라고 부른다. 다만 저작권법상 출판은 '예술작품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文書)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

출판계약은 법적 효력에 따라 3가지로 나뉜다.

둘째, 독점출판허락계약이다. 이 계약은 작가가 출판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예술작품의 독점 출판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출판사가 독점 출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권설정계약과 유사하지만, 제3자의 출판권 침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구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판권설정계약과 다르다.



셋째, 단순출판허락계약이다. 이 계약은 작가가 예술작품을 비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작가는 해당 예술작품의 중복 출판을 허락할 수 있다.

단체명의저작물

예술작품의 창작은 본래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적으로는 법인이나 단체 등도 저작자로 인정된다. 이와 같이 법인 등이 저작자로 인정되는 저작물을 ‘단체명의저작물’이라고 한다.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자가 창작한 작품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직장인을 말한다.

둘째, 법인 등의 기획 하에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주어진 업무로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 시간에 작성된 것일지라도 단순히 개인의 취미로서 창작된 것이라면 법인 등이 저작자인 단체명의저작물이 아니다.

셋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표된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의 저작물이 된다.

넷째, 근로계약이나 근무규칙에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근로자로 한다는 약정이나 규정이 없어야 한다.

보호 기간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된다. 즉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망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다만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되는 단체명의저작물, 영상저작물, 무명(無名)이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異名)으로 공표된 작품의 저작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50년 간 보호된다.

저작권의 소멸

저작권은 주어진 기간 동안만 보호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소멸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주요협약 중 베른협약은 2006년 1월 15일 현재 16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한 160개 국가의 외국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우리 저작물도 160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된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 상태(public domain)에 놓였다고 말한다.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을 포기하거나 저작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도 저작권은 소멸한다.

외국저작물의 보호

우리나라는 저작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해당 국제조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우리 국민의 저작물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조약상의 내국민 대우 조항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저작권 관련 주요협약 중 베른협약은 2006년 1월 15일 현재 160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한 160개 국가의 외국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우리 저작물도 160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된다.

침해 구제 절차

예술작품의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민사 구제는 침해를 받은 저작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의 정지 혹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절차이고, 형사 구제는 검찰이나 경찰에 침해자를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침해받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